정보보안계약특수조건

제1조(목적) 이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(주)(이하 '한수원'이라 한다.)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제반 보안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'보안사고'란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내·외부자에 의한 자료유출 및 외부 공격자의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침해사고 등으로 한수원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.

② '계약상대자등'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측 작업자(하수급인·재하수급인(및 각 작업자 포함))를 말한다.

③ '한수원 자료'란 한수원에서 정의하는 기록물(문서) 분류체계 및 「기술정보관리지침」에 의거 공개로 정의된 이외의 문서와 계약 수행과정에서 생산되어 한수원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문서 등을 말한다.

④ '자료유출'이란 '한수원 자료'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말한다.

⑤ '정보시스템'이란 PC·서버·모바일기기 등 단말기, 보조기억매체, 전산·통신장치, 정보통신기기,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.

⑥ '정보자산'이란 '정보시스템'을 포함한 전자정보, 문서 등을 말한다.

⑦ '휴대용저장매체'란 디스켓·CD·외장형 하드디스크·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.

⑧ '업무전산망'(이하 '업무망'이라 한다)이란 한수원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,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(이하 '내부망'이라 한다)을 말하고, 망 미분리 사업소는 인터넷서비스도 병행 제공되는 내부전산망을 포함한다.

⑨ 인터넷서비스망(이하 '인터넷망'이라 한다)이란 한수원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과 계약상대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.

⑩ '출입규정 위반'이란 한수원 시설에 출입할 때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대책법 또는 한수원 출입관리지침에 의한 출입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보안준수 사항 등) ①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,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수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등이 계약 수행과정에서 침해사고,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 발생 시 한수원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한다.

③ 한수원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등을 대상으로 보안점검,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시행하고, 관련 법령, 규정, 해당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개선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등은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계약상대자등은 인터넷망에 연결된 PC에 한수원 자료를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.

⑤ 계약상대자등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악성코드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.

⑥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시설을 출입할 때 한수원 「출입관리지침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약상대자등의 행위제한 등) ① 계약상대자등은 계약기간(하자보증기간 포함)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한수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,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
2. 한수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
3. 한수원 정보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및 유포시도
4. 한수원 관련 개인정보·신상정보 목록 유출 및 유출시도
5. 원전 시설사진, 비공개 항공사진·공간정보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
6. 원전 설계도면 등 주요 도면 유출 및 유출시도
7. 계약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및 유출시도
8. 계약 수행과정에서 생산 및 제공한 자료에 대한 악의적 사용 및 개인목적 사용
9. 비인가 원격작업 등을 통한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
10.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한수원 통제구역 무단 침입 및 내부 시스템 접근 및 접근 시도
11. 한수원 업무망 접속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으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12.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(웹하드·P2P 등)또는 메일,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13. 한수원 업무망과 계약상대자등의 인터넷망 혼용 사용으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14. 한수원에서 인가하지 않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으로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
15. 한수원 업무망 사용PC의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강제 삭제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16. 계약상대자등의 단말기를 한수원 업무망에 무단 연결하여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17. 한수원 자료가 보관된 PC 보안관리 소홀(부팅·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, 비밀번호 노출, 문서 암호화 미처리, 시건장치 미장착 등)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18. 한수원 자료 방치, 관리소홀(캐비넷·서류함·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등)로 인한 자료유출

② 한수원 사내 상주하거나, 한수원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상대자 등은 계약기간(하자보증기간 포함) 중 별표 1 「계약상대자 등 보안위규 처리기준」의 '위규사항'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계약기간(하자보증기간 포함) 중 한수원 시설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 등은 별표 1 「계약상대자 등 보안위규 처리기준」의 '위규사항'에서 정한 출입규정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부정당업자 지정 및 위약금 부과 등) 계약상대자 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「계약상대자 등 보안위규 처리기준」에 따라 조치 요구 및 별표 2 「보안 위약금 부과기준」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지정 및 위약금 부과를 할 수 있다.

제6조(등록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) 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상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가 제4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입찰 참가 제한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계약상대자 측 작업자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계약상대자의 입찰제한 세부기준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「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1] 개별기준에 따른다.

제7조(계약 해제·해지 등) 계약상대자 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제4조 제1항의 각호 해당행위를 한 경우, 한수원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다만 보안준수의무

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보안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(하도급 계약)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자도 한수원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수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하여 하수급자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,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한수원은 하수급자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,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.

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, 한수원은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고, 제7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조건(제3차 개정)은 2022년 11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, 시행고시 및 국가 「정보보안 기본지침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한국수력원자력 「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」,「비밀세부분류지침」,「기술정보관리 지침」,「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」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.